

##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지원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지원조례안은 2004년 02월 12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 제정이유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기존 정액보조금지원제도와 임의보조금지원제도가 통합되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II. 주요골자

- 가.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종로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나.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보 또는 구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결정서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 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과장급 3인과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척규정을 둠(안 제12조).
- 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등 추진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사회단체보조금집행 정산 검사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8조).

### Ⅲ. 검토의견

#### 1.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 배경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개선방향을 보면, 정액보조단체별(13개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2003. 11. 26 행정자치부(재정과-2557호) 및 2003. 11. 28 서울특별시(행정13310-3552호)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정조례안은 사회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지원대상(안 제4조), 지원범위(안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안 제6조), 신청 및 접수(안 제7조), 심의(안 제8조), 결과통보(안 제9조), 위원회 구성(안 제10조), 위원회 기능(안 제11조), 회의 운영(안 제12조), 분과위원회(안 제13조), 의견청취 등(안 제14조), 회의록(안 제15조), 실비보상(안 제16조), 운영세칙(안 제17조), 보고 등(안 제18조), 별도계정(안 제19조), 준용(안 제20조)을 포함한 20개의 조문과 2개항의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 2. 동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첫째, 위원회 구성 (안 제10조)

안 제10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2003. 8. 14 행정자치부(재정과-994)로부터 시달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보완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동 조례 표준안은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하되, 자치구는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조례안의 위원 정수는 적절하다고 보이나, 당연직 위원중 소관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사회복지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2. 10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구성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10개구중 대다수 구가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우리구가 당연직 위원을 과장급으로 구성하려는 것은 정책적인 안건을 결정하는 측면 보다는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실무중심형으로 안건을 심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장급으로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즉, 자치행정과장은 소관업무부서장, 기획예산과장은 보조금관리 총괄부서장, 사회복지과장은 각 보훈단체 및 노인회 등 관련단체 소관부서장으로서 업무적으로 밀접하다고 보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둘째, 회의 운영 (안 제12조)

안 제12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척조문을 둔 근본취지는 어느 특정 사회단체에 회원으로 재임 중인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을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관여한다면 각 사회단체들로부터 심의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안 제5조의 지원범위 및 안 제8조의 심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 공정하게 심의하여 각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면 될 것이므로 굳이 이 조문과 같이 해당 위원에게 당해 안건의 심의(발언)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제척조문을 둔다면 너무 지나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안건심의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동 조문중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라고 의결권(표결권)만 제한하도록 완화규정을 두는 것이 원만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바람직스럽다고 보이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시다.

## IV. 관련법령

###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및보완지침 (85 쪽. 2003.8.4)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
-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
- 운용절차 :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 사회단체신청 ⇒ 심사 ⇒ 배분
- 심사기준 : 자치단체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 심의
- 심사결과 :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하여 반영

(별표 1)

## 자치구별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2004. 2. 10 현재. (단위 : 명)

구 별	당 연 직	구의원	민간인
종로구 9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2	2
중구 15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2	6
용산구 9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1	2
성동구 10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3	3
광진구 13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2	5
동대문구 9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2	4
성북구 9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2	4
마포구 15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3	5
서대문구 9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관리국장	2	1
은평구 14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구의원 1 시의원 1	9